##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14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 : 권명호 · 유상범 · 엄태영

김도읍 · 송언석 · 이만희

최춘식 · 최형두 · 강기윤

구자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 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여 신시장 개척,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·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

다만, 전문무역상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그러나,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4 7조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청문) 산업통상자원부장관	제47조(청문)
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	
여야 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.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
	<u>무역상사의 지정 취소</u>
<u>1.·2.</u> (생 략)	<u>2.·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	같음)